

(주)스타트업의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계약서 패키지

To :투자자님

SAMPLE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XX년 XX월 XX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2. 회사: 주식회사 스타트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창업자

다 음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XXX주
 - 2) 1주의 금액(액면가): 금 XXX원
 - 3)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금 XX,XXX원
 - 4)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금 XXX,XXX원
 - 5)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20XX년 XX월 XX일
 - 6) 투자자에게 배정할 본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투자자	XXX주	XX,XXX원
합계	XXX주	XX,XXX원

2.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3.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4.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만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주주권증서
-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 3)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

1.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 하였을 것
2. 회사가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를 준수하였을 것. 단,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또는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2.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최저배당율: 액면가액 기준 연 1.0%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
3. 실제 배당이 최저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 이익배당에 대한여 누적적으로 배당 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적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제5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유중인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제1조 3항의 '존속기간'내에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3.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상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청구기간: 투자자는 발행일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우선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상환방법: 투자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4.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 계약에 의거 "투자기업"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 복리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제8조 신주인수권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거래완결 전 의무

회사는 본건 "우선주"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제10조 거래완결 전 해제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단, 거래완결 후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2.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

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거래의 완결

1. 투자자는 20XX년 XX월 XX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예금계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예금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2.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 전부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다.
3. 거래완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사는 필요한 증자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타 본 계약서상의 본건 주식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
2.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의 내용 변경

1.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5조 통지

1. 본 계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7조 세금

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8조 기타

1. 회사는 회사의 영업 등 사업 진행현황을 최소 주 2회 이상 오픈트레이드(www.opentrade.co.kr) 타임라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지분 매각 등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오픈트레이드(www.opentrade.co.kr)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은 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 또는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Tag-along)
3. 회사는 후속 투자유치시 본 계약상 투자자가 인수한 회사 주식을 후속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체결일 : 20XX년 XX월 XX일

투자자 : 투자자 (서명: _____)

주소:

회사 : 주식회사 스타트업

주소

대표이사 창업자 (인)

SAMPLE

첨부 #1-스타트업 통장 사본

저희 **우리은행**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인 지 세
100월
납대문세무서장
선납승인 2012년 177호



서명


인감사용
신고번호:

계좌관리점: 삼성역지점	개설일자: 2012-12-20	전화: 02- 528-5900	
통장발행점: 삼성역지점	발행일자: 2012-12-20	전화: 02- 528-5900	
<small>(이 통장은 표지를 참하여 12월입니다)</small>			<small>중요증서 11037</small>

[12월카드]	[BC카드]	[삼성카드]	[POS카드]	[신용이서]	[현금카드]	통장일련번호: 001
N	Y	N	Y	0	0	

약관적용 안내

- ▶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탁거래의 기본 약...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 우리 은행에 변경된 약관...
영향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 가계우대직급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에 혜택을 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실정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만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 통장, 인강, 현금지급 (CD) 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시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 신고된 사항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통장, 현금카드, IC카드 분실신고 : 1599-5000 / 1588-5000
신용(BC), 체크카드 분실신고 : 1588-9955

텔레뱅킹/고객상담 : ☎ 1599-5000, 1588-5000 [해외에서 이용시 82-2-2006-5000]
「고객의 소리」접수 : ☎ 080-365-5000(핸드폰이용시 ☎ 02-2008-5000)

주권미발행확인서

아래와 같은 귀하 소유 주식에 대하여 당사가 주권을 미발행 하였음을 확인하고, 주권 발행시 즉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스타트업
2.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3. 1주당 액면금액 : 금XXX원
4. 주식의 수량 : XXX주
5. 액면 총 금액 : XX,XXX원
6. 주주명:



20XX년 XX월 XX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번지 스타트업빌딩 1층

주식회사 스타트업

대표이사 XXX

(대표이사 날인)

(법인인감 날인)

인감대조 확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